

제14차 방송통신위원회 회의록 (서면회의)

1. 회의일시 : 2022. 3. 29.(화)

2. 장 소 : 방송통신위원회

3. 참석위원 : 한상혁 위원장
안형환 부위원장
김 현 상임위원(3인)

4. 불참위원 : 김효재 상임위원
김창룡 상임위원(2인)

5. 회의내용

Ⅰ 서면회의 사유

- 「방송통신위원회 회의운영에 관한 규칙」 제14조(서면결의)에 의거, 의결사항 '가'와 '나'는 토론을 요하지 아니하거나 일상적·반복적 안건에 해당됨

Ⅱ 의결사항

가. 방송광고 법규위반 사업자 행정처분에 관한 건(2022-14(서)-049~052)

- 주식회사 한국시니어티브이, 주식회사 에스티엔스포츠, 안동문화방송 주식회사, 주식회사 채널유미디어의 방송광고 법규위반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를 원안대로 심의·의결함
 - 간접광고 고지를 위반한 주식회사 한국시니어티브이에 500만 원의 과태료 부과
 - 방송프로그램 편성시간당 광고시간 총량을 위반한 주식회사 에스티엔스포츠에 600만 원의 과태료 부과
 - 중간광고 고지·시간을 위반한 안동문화방송 주식회사와 주식회사 채널유미디에 각각 500만 원, 1,300만 원의 과태료 부과

나. 협찬고지 법규위반 사업자 행정처분에 관한 건(2022-14(서)-053~059)

- 한국방송공사, 주식회사 엘지헬로비전 대구수성방송, 주식회사 엘지헬로비전, 재단법인 온누리선교재단, 주식회사 와이엠미디어, 주식회사 스포티비, 주식회사 사회안전방송의 협찬고지 법규위반에 대하여 과태료를 원안대로 심의·의결함
 - 협찬고지 허용범위를 위반한 한국방송공사, 재단법인 온누리선교재단, 주식회사 와이엠미디어, 주식회사 스포티비에 각각 500만 원, 주식회사 엘지헬로비전 대구수성방송에 1,875만 원, 주식회사 엘지헬로비전에 1,250만 원의 과태료 부과
 - 협찬고지 시점을 위반한 주식회사 사회안전방송에 350만 원의 과태료 부과